

대학원학칙 KU-KIST융합대학원 시행세칙

2013. 3.1 제정

2014. 3.1 개정

2014. 9.1 일부개정

2015. 3.1 일부개정

2016. 9.1 일부개정

2019. 3.1 일부개정

2020. 3.1 일부개정

2021. 3.1 일부개정

<KU-KIST융합대학원 행정실>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함) 대학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함)이 KU-KIST융합대학원(KU-KIST Graduate School of Converging Science and Technology, 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교육목표) 이 대학원은 본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협력하여, 폭넓은 융합적 사고를 고취하고 창조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국내외의 융·복합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, 나아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 (대학원의 종류와 명칭) 이 대학원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원이다. <개정 2015.3.1.>

제 4 조 (과정) 이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 통합과정을 둔다.

제 5 조 (학과(전공)와 정원)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조 및 대학원 설치학과·입학정원 시행세칙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2 장 수업의 방법과 수업·재학 연한

제 6 조 (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) ① 본교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(이하 ‘일반대학원 시행세칙’이라 함)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 연한은 각 2년으로 하며, 석·박사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. <개정 2015.3.1.>

② 재학 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, 재학 연한을 경과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.

제 7 조 (수업 연한의 단축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 6개월(1개 학기), 석·박사통합과정은 1년(2개 학기) 이내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1.>

제 8 조 (수업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3 장 입학과 전공 변경

제 9 조 (입학시기) 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0 조 (입학자격) 학칙 제4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1 조 (입학전형) 학칙 제7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2 조 (지원절차) 학칙 제8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3 조 (지원자의 전공분야) 이 대학원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부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19.>

제 14 조 (편입학) 학칙 제9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5 조 (재입학) 학칙 제10조에 따르며, 재입학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6 조 (정원의 입학) 학칙 제6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7 조 (전공변경) ① 입학 후 전공의 변경은 신·구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의 수료 전 매학기 초 학적변동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전공변경허가원
2. 성적증명서

③ 전공 변경 전 취득한 교과학점의 인정은 변경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 장 등록과 수강신청

제 18 조 (등록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9 조 (등록금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20 조 (미수료자 등록금 감면 및 등록금 반환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21 조 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지도를 포함하여 매학기 16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. 단, 제31조의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별도로 하며,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19.>

③ 이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,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동안 매학기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지도학점은 매학기 2학점씩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본교 타 대학원의 교과목 수강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3.12.19.>

⑥ <삭제 2013.12.19.>

- 제 22 조 (수강신청 정정) ①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19.>
 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와 폐강과목을 정정할 자는 행정실에서 "수강신청(정정)원서"를 교부받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 또는 정정을 한다.<개정 2013.12.19.>

제 5 장 휴·복학과 자퇴 및 제적

- 제 23 조 (휴학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24 조 (군입대휴학) <삭제 2015.3.1. >
- 제 25 조 (통산휴학기간) 학칙 제12조에 의한 이 대학원의 각 과정별(석사과정, 박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) 통산휴학기간은 1년(2학기)으로 한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26 조 (재입학자 휴학기간) 재입학자가 사용가능한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·후를 합산하여 이 대학원에서 정한 통산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 27 조 (복학) 학칙 제13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28 조 (자퇴) 학칙 제14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29 조 (제적) 학칙 제15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6 장 교육과정과 수료

- 제 30 조 (교육과정 및 교과목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이 대학원이 정한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.
- 제 31 조 (지도교수 지정과목) ① “지도교수 지정과목“이란 학위에 필요한 교과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학점이며,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지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②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5과목 이내에서 지도교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,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정과목을 정한다.
 ③ 전공별로 지도교수 지정과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
- 제 32 조 (연구윤리교육) ① “연구윤리교육“이란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.
 ② 세부 내용은 관련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한다.
- 제 33 조 (학점인정) ① 박사과정 입학 전의 초과취득학점 인정은 학기 초 20일 이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 ②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,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③ 이 대학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.
- 제 34 조 (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 인정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- 제 35 조 (학부생의 대학원과목 선수강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36 조 (전문·특수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37 조 (이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 학점 인정) ① 이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소정 수학 연한이 경과된 자가 다시 신규로 입학하는 경우와 이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전공을 변경하여 다시 입학한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학점 중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에서는 12학점, 박사과정에서는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② 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이 대학원의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박사과정 진학 시 해당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.
- 제 38 조 (이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동일 박사과정 입학자의 취득학점 인정)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 중 박사과정 재학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- 제 39 조 (타 대학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)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석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,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- 제 40 조 (재학 중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취득학점 인정)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9장에 준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41 조 (재입학 학점인정) 퇴학,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 당시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단,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 42 조 (성적의 등급)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43 조 (과정별 수료)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석사과정 : 32학점(교과학점 24학점, 연구지도학점 8학점) 이상. 단, 제7조의 수업 연한 단축자는 30학점(교과학점 24학점, 연구지도학점 6학점) 이상<개정 2013.12.19.>
2. 박사과정 : 44학점(교과학점 36학점, 연구지도학점 8학점) 이상. 단, 제7조의 수업 연한 단축자는 42학점(교과학점 36학점, 연구지도학점 6학점) 이상<개정 2013.12.19.>
3. 석·박사통합과정 : 70학점(교과학점 54학점, 연구지도학점 16학점) 이상. 단, 제7조의 수업 연한 1학기 단축자는 68학점(교과학점 54학점, 연구지도학점 14학점), 1년 단축 대상자는 66학점(교과학점 54학점, 연구지도학점 12학점) 이상
② 제1항의 수료를 위한 교과학점의 총 취득학점(연구지도학점 제외) 평점평균은 3.5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제1항의 수업연한 단축자는 평점평균이 4.0 이상이어야 한다.<개정 2013.12.19.>
- 제 44 조 (수료의 시기)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각 과정의 수료는 매 학기 말로 한다. 단, 제7조에 따라 수업 연한을 단축하여 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직전 학기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수업 연한 단축 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12.19.> <개정 2015.3.1.>

제 7 장 지도교수, 학위청구, 학위수여

- 제 45 조 (지도교수 위촉) ① 대학원장은 학생 입학 후 2개월 이내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.
 ② 대학원장은 이 대학원 소속 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46 조 (공동지도교수)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.
- 제 47 조 (지도교수 변경)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③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 ④ 지도교수를 변경한 이후 1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.
- 제 48 조 (지도교수 연장) ① 이미 위촉된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하는 경우 학생은 퇴임일로부터 1학기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②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나 석좌교수로 위촉되면 위촉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'지도교수연장원'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- 제 49 조 (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회) ① 대학원장은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②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한다.
- 제 50 조 (학위수여) 이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51 조 (공동 또는 복수학위 수여)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- 제 52 조 (학위취소) 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.

제 8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

- 제 53 조 (자격시험의 종류) 자격시험은 영어시험, 종합시험,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 단,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은 구술시험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 54 조 (영어시험) ① 영어시험은 본교 혹은 외부 공인기관이 시행한 영어시험으로 하며, 외부 공인기관 영어시험의 합격 점수는 TOEFL(CBT) 213, TOEFL(iBT) 80, TEPS 360, IELTS 6급, TOEIC 800 이상으로 한다.
 ② 성적표(또는 증명서)는 대학원 입학원서 접수 시부터 제출 가능하며, 성적표(또는 증명서)는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.
 ③ 수료생 또는 5학기(석·박사통합과정은 9학기)이상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국제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영어시험 대체강좌

를 수강하고 A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④ 영어를 주 언어로 하는 국가에서 수학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인정하면 영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55 조 (종합시험 응시 자격 및 시기) ①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5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②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교과학점 26학점 이상, 석·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은 교과학점 39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균평점 3.5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.

제 9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

제 56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요건)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제43조의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자
2. 제31조의 지도교수 지정과목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(해당자에 한함)
3. 제53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.
4. 제57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을 충족한 자
5. 제58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

제 57 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) ① 석사과정 학생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학술지 SCI급(SCI, SCIE)에 제1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야 함
2. 학술지 SCI급(SCI, SCIE)에 공동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고 국내·외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의 구두발표를 하여야 함

②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제1저자로서 학술지 SCI급(SCI, SCIE)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(또는 게재 승인)하여야 함
2. 전체 학술지의 Impact Factor 합이 ISI의 최신 JCR 전분야 Impact Factor 기준 상위 1.5%에 해당하는 값을 상회하여야 함
3.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에 따른다.

제 58 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)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4년, 박사학위과정은 7년, 석·박사통합과정은 8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. 단, 군복무, 출산, 휴학, 기타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1항에서 석사과정 2학기 이수 후 석·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2학기 기간을 석·박사통합과정 기간에 포함한다.

제 58 조의 2 (재학연한 초과자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) ① 수료 후 박사학위논문 제출연한(재학연한)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② 연장이 허가된 자는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, 구술시험, 영어시험은 인정받는다.

③ 연장이 허가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부과된다.

- ④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.

- 제 59 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)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, 후기는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60 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)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61 조 (심사용논문의 분량)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.
- 제 62 조 (심사용논문의 용지 및 판형)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, 크기는 4·6배판(대략 257×188mm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63 조 (심사용논문의 개요 및 작성 용어)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·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.
②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고, 국문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64 조 (논문심사위원회) ①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하며,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②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게 한다. 단,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③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,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
④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최소 1명 이상, 최대 2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중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,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 <개정 2016.9.1.>
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,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 65 조 (논문심사) ① 학위 논문의 심사방법은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2차로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.
② 논문의 최종심사는 합격,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③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66 조 (보완 논문심사)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·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이후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.
- 제 67 조 (재심사) 논문심사 결과 수정·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·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- 제 68 조 (완제본논문의 용어)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,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.
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 69 조 (완제본논문의 온라인 등록) 완제본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,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.
- 제 70 조 (완제본논문의 제본 및 제출)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면 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·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.
② 완제본논문 원본은 심사위원(장)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.
③ 석사학위 논문 중 3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, 나머지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.
④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, 금박인쇄로 한다.
- 제 71 조 (완제본논문의 판형 및 지질) 완제본논문의 규격은 4·6배판으로 하며,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.

- 제 72 조 (완제본논문의 장정) 완제본논문의 표지, 내지 등의 장정(裝幀) 및 작성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62조 별지의 '학위논문 작성 규격'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73 조 (완제본논문 활자) ①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 30포인트(pt.),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, 2행 이상일 경우에는 21포인트로 한다.
- ② 학교명칭(高麗大學校 KU-KIST融合大學院. KU-KIST Graduate School of Converging Science and Technology, Korea University)의 활자는 논문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,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.
- ③ 년 월 일과 인(印)은 14포인트로 한다.
- ④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(학과, 성명, 지도교수, 석사학위논문, ……제출함, ……완료 함 등).
- ⑤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.
- 제 74 조 (완제본논문 양식의 차례)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64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
제 10 장 수료연구생

- 제 75조 (수료연구생 및 수료생) ①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“등록” 및 “수료연구지도”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수료연구생에게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 <조 신설 2015.3.1.>

제 11 장 석·박사통합과정

- 제 76 조 (용어정의) 석·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 및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서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.
- 제 77 조 (선발) ① 제1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국내·외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외국 정규학교 16년과정 이수자 포함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·후기 입학시험에서 선발한다.
- ② 제3학기에 입학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학기를 이수하고 16학점(교과학점 12학점, 연구지도학점 4학점)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및 7월에 실시한다.
- ③ 제3학기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수업 연한 및 학점취득 산정에는 석사과정 이수 학기와 취득한 교과학점 및 연구지도학점을 포함한다.
- 제 78 조 (수업 연한 단축 조건) <삭제 2013.12.19.>
- 제 79 조 (중도포기 및 중도탈락)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자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중도탈락 학생은 이 대학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매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이 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.
- ③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원 석사

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 12 장 기타

- 제 80 조 (대학원위원회) ① 이 대학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
- ② 대학원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을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(대학원장 및 전공별 주임교수)과 각 전공별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⑤ 그밖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"위원회설치운영규정"을 준용한다.
- 제 81 조 (학칙준수) 학생은 고려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칙 및 이 세칙을 준수하고, 대학원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.
- 제 82 조 (장학금 및 연구비)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학업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
- ③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결정은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 83 조 (포상과 징계) 학칙 제39조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1.>
- 제 84 조 (공개강좌) ① 공개강좌는 이 대학원의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,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- ② 공개강좌의 과목, 제목, 기간, 수강정원,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매 개강시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.

제 13 장 준용규정

제 85 조 (준용)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 2013.12.19.)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[제 5조, 제7조, 제13조, 제21조 2,5,6항, 제22조, 제 43조, 제44조, 제77조] 단, 제21조2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개정 2014.09.01.)

(시행일)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[제6조, 제43조]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 [제3조, 제5조 내지 제16조, 제18조 내지 제20조, 제23조 내지 제25조, 제27조 내지 제29조, 제34조 내지 제36조, 제40조, 제42조, 제44조, 제50조, 제60조, 제72조, 제74조, 제83조 개정, 제75조 신설, 제76조 내지 제85조 조 번호 변경]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64조 제4항 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 (제54조, 제57조 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 (제57조 제2항 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신설: 제58조의 2